

e-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 개정대비표

1.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비고
<p>e-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p> <p>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e-안심팩토링대출용)</p> <p>제1조 매출채권거래의 범위~제8조 매출채권의 환매 (기재생략)</p> <p>제9조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 ①~② (기재생략)</p> <p>③ 본인은 제2항에서 정한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u>(신설)</u></p> <p><u>(신설)</u></p> <p>제10조 인지세의 부담 (기재생략)</p> <p>제11조 감액·정지 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본인에 대한</p>	<p>e-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p> <p>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e-안심팩토링대출용)</p> <p>제1조 매출채권거래의 범위~제8조 매출채권의 환매 (현행과 같음)</p> <p>제9조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본인은 여신과목의 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여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때에도 이 약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p> <p>④ 분할취급 대출은 건별로 각각 매 대출실행일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p> <p>제 10 조 지연배상금</p> <p>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9 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 다음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③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초과지급 및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초과된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제11조 인지세의 부담 (현행과 같음)</p> <p>제12조 감액·정지 ①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p>	<p>업무 절차에 따른 문구수정</p> <p>업무 절차에 따른 문구추가</p> <p>업무 절차에 따른 문구추가 업무절차에 따른 조 신설</p> <p>조 철폐하</p> <p>조 철폐하 업무 절차에</p>

<p>통지에 의하여 제9조에서 정한 한도액 및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한도액을 줄이거나 매출채권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p> <p>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가.~라. (기재생략)</p> <p>2. 본인 또는 거래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가. 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외부신용평가기관 또는 당행 신용평가에 따른 당해 기업의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나.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절/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아야 합니다.</p> <p>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가.~라. (현행과 같음)</p> <p>2. 본인 또는 거래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가.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나. 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 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절 또는 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라. 신문, 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본인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마. 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삭제)</p>	<p>다른 문구 구체화</p> <p>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형식으로 수정 신설 나→다로 체하</p> <p>신설</p> <p>신설</p> <p>다→바로 체하</p> <p>라→사로 체하</p>
<p>② 제1항에 의한 감액의 경우에는 감액으로 말미암아 한도를 초과한 매출채권 양도분은 곧 반환 받거나 환매하고, 한도를 초과한 매출채권 대출분은 곧 갚기로 합니다.</p> <p>③ (기재생략)</p> <p>제12조 대출금의 변제 등 (기재생략)</p> <p>제13조 통지의무 (기재생략)</p> <p>제14조 양도·질권설정의 금지 (기재생략)</p> <p>제15조 담보권의 이전 (기재생략)</p> <p>제16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기재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 대출금의 변제 등 (현행과 같음)</p> <p>제14조 통지의무 (현행과 같음)</p> <p>제15조 양도·질권설정의 금지 (현행과 같음)</p> <p>제16조 담보권의 이전 (현행과 같음)</p> <p>제17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현행과 같음)</p>	<p>업무절차에 따른 불필요 조항 삭제 항 체상</p> <p>조 체하</p> <p>조 체하</p> <p>조 체하</p> <p>조 체하</p> <p>조 체하</p>

제17조 자료의 제출 등
(기재생략)

제18조 협의사항
(기재생략)

추 가 약 정 서(판매기업용)

[e-안심팩토링대출용]

본인은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을 위한 _____년 _____월 _____일자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이하 "원 약정서"라 합니다)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서류의 제출)
(기재생략)

제 2 조 (입금계좌 지정)

대출금 또는 상기 채권만기시의 현금 입금계좌는 다음 계좌로 합니다.

계좌번호 : _____ 예금주: _____

제3조 (개별대출의 실행)

①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은
INTERNET(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귀행의 전산에 게시된 담보 매출채권[귀행이
원 약정서 및 본 추가약정서에 따라 본인에게 취급한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귀행이 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본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채무자인 _____(이하 "거래처"라
합니다)로부터 통보받은 구체적인 채권명세를 기초로 귀행이 전산에 게시한
매출채권 내역을 뜻하며, 이하 "매출채권"이라 합니다]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받기로 하고, 귀행 또는

제18조 자료의 제출 등
(현행과 같음)

제19조 협의사항
(현행과 같음)

추 가 약 정 서

[e-안심팩토링대출용]

본인은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을 위한 _____년 _____월 _____일자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이하 "원 약정서"라 한다)에 추가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제1조 (서류의 제출)
(현행과 같음)

제 2 조 (입금계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대금 및 외상매출채권 만기결제 대금의 입금을 위한
입금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CMS 계좌 제외) 중
다음의 계좌로 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비 고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제3조 (개별대출의 실행)

① **은행이 원 약정서에 따라 본인에게 대출함으로써 본인이 부담하게 될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에
따라 본인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조 체하

조 체하

용어 수정

준용 약관 추
가 등 문구 수
정

용어 수정

업무 절차에
따른 문구 구
체화

<p>인터넷 등의 전산상의 사유로 해당일에 취급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대출받기로 합니다.</p>		
<p>(신설)</p>	<p>②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은 은행이 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 할 수 있기로 합니다.</p>	<p>상동</p>
<p>(신설)</p>	<p>③ 외상매출채권 별 대출가능금액은 채권금액에서 채권별로 이미 대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합니다.</p>	<p>상동</p>
<p>② 본인이 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 매출채권은 대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그 지급기일이 180 일 이내인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p>	<p>④ 본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발행일(통보일)로부터 180 일 이내인 채권에 한합니다.</p>	<p>②→④항 체하 및 문구 수정</p>
<p>(신설)</p>	<p>⑤ 대출가능기간은 외상매출채권별로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협력기업의 대출취급가능일부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p>	<p>업무절차에 따른 문구 구체화</p>
<p>(신설)</p>	<p>⑥ 건별대출의 신청은 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p>	<p>상동</p>
<p>제4조 (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p>	<p>제4조 (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p>	
<p>①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변제기일로 합니다.</p>	<p>①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만기일로 합니다.</p>	<p>용어 수정</p>
<p>② 1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귀행이 동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총당하기로 하며,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귀행에게 담보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은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원 약정서 제8조2항의 환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의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p>	<p>② 1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귀행이 동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총당하기로 하며, 거래처가 만기일에 귀행에게 담보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은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원 약정서 제8조2항의 환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의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p>	<p>용어 수정</p>
<p>③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입금(또는 결제)한 매출채권결제금액이 협력업체들(본인 포함)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대출 취급분, 미취급분의 순서로 회수하여 만기도래 순, 접수일자 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상환처리하기로 합니다.</p>	<p>③ 거래처가 만기일에 입금(또는 결제)한 매출채권결제금액이 협력업체들(본인 포함)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대출 취급분, 미취급분의 순서로 회수하여 만기도래 순, 접수일자 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상환처리하기로 합니다.</p>	<p>용어 수정</p>
<p>제5조 (대출의 제한)</p>	<p>제5조 (대출의 제한)</p>	
<p>①~③ (기재생략)</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원 약정서의 여신한도약정금액에도 불구하고 귀행과 거래처간에 체결한 '거래처의 협력업체들(본인 포함)에 대한 외상채권대출의 총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p>	<p>④ 원 약정서 제 1 조의 여신한도금액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다른 협력기업의 대출잔액의 합계금액이 은행과 구매기업간에 체결한 "협력기업에 대한 총대출한도"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p>	<p>용어 수정</p>
<p>제 6 조 (지연이자 수취)</p>	<p>제 6 조 (관련법상 지연이자에 대한 유의사항)</p>	<p>모호한 문구의 제목 및 용어 수정 (금감원 권유)</p>
<p>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에</p>	<p>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에 따라</p>	

<p>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 (할인료 또는 대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② (기재생략)</p> <p>제7조 (정보제공의 동의) 본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본인에 관한 기본정보 및 개별대출 실행내역 등의 거래내역을 “거래처”에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p> <p>제8조 (면책)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p> <p>② (기재생략)</p> <p>제9조 (상환의무) 거래처와 귀행 간에 사전에 협의한 인터넷뱅킹 등 기타 전산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명세 통보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채권명세, 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본인이 인터넷 또는 창구에서 대출 신청시 전산오류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보다 대출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p> <p>제 10 조 (기한연장 및 약정의 자동 해지) ① (기재생략) ②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2년이상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자로 본 이용약관 및 여신약정은 별다른 통보없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p> <p>제11조 (본 추가약정의 효력) 본 추가약정, 원 약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p>	<p>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 (할인료 또는 대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 (정보제공의 동의) 이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구매기업에게 본인에 관한 약정정보 및 사업자정보, 대출내역 등을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p> <p>제8조 (면책)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 (상환의무) ① 구매기업과 은행 간에 사전에 협의한 전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명세 통보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채권명세 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본인이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창구에서 대출 신청시 전산오류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정당한 외상매출채권금액보다 대출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그 차액은 본인이 즉시 갚기로 합니다.</p> <p>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 3항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본인이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p> <p>1. 허위·가공거래, 유통등에 의해 발행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취급된 경우 2. 대출취급 시 작성오류, 허위, 위·변조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대출이 취급된 경우. 다만 작성오류인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자료를 보완 제출하면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제 10 조 (기한연장) ① (현행과 같음) (삭제)</p> <p>제11조 (본 추가약정의 효력) 본 추가약정, 원 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p>	<p>용어 수정</p> <p>손님에게 불리한 문구 수정 (금감원 권유)</p> <p>항 번호 신설 및 문구 수정</p> <p>업무절차에 따른 항 및 호 신설</p> <p>손님에게 불리한 조항 수정 및 삭제 (금감원 권유)</p> <p>준용약관 기재</p>
--	--	--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본 추가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원 약정,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순서로 적용합니다.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포괄계약)

(e-안심팩토링대출용)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_____ (이하 "판매기업"이라 합니다)은 판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매출채권거래를 위하여, 판매기업이 _____ (이하 "구매기업"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등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은행과 판매기업의 매출채권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과 판매기업 양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과 기타 그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양도할 대상채권 및 피담보채무)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체결한 아래의 기본계약에 따라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채권(이하 "대상채권"이라 합니다) 전액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피담보채무의 범 위	은행과 판매기업 당사자 사이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이하 "여신거래약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매입하는 매출채권거래 및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 기타 여신거래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
-----------------------	---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본 추가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원 약정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포괄계약)

(e-안심팩토링대출용)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_____ (이하"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라 합니다)은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매출채권(팩토링)거래를 위하여, _____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_____ (이하 "구매기업"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등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매출채권(팩토링)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 양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과 기타 그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양도할 대상채권 및 피담보채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아래의 피담보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합니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체결한 아래의 기본계약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될 일체의 채권(이하 "대상채권"이라 합니다) 전액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피담보채무의 범 위	은행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 당사자 사이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서(이하 "여신거래약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은행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으로부터 매입하는 매출채권거래 및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 기타 여신거래약정과 관련한 일체의 채무
-----------------------	---

용어 수정

용어 수정

용어 수정

용어 수정

<p>양도할 대상채권</p>	<p>물품 또는 용역등과 관련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_____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또는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 등 또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매출채권</p>	<p>기본계약</p>	<p>물품 또는 용역 등과 관련하여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_____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또는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 등 또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p>	<p>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한 문구 수정</p>
<p>제 3 조 (대리권 수여 및 채권양도 등)</p>	<p>1. 판매기업은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 앞 포괄채권양도 통지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은행에게 수여합니다.</p> <p>2.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명세를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외상매출채권은 이 계약에 의해 채권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p> <p>3. 은행은 외상매출채권 양도 통지서 원본을 구매기업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p>	<p>제 3 조 (대리권 수여 및 채권양도 등)</p>	<p>1. 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은행은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에게 장래 발생할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외상매출채권 양도통지서(장래채권 양도방식용) 원본을 구매기업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p> <p>2.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외상매출채권은 이 계약에 의해 채권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은행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에게 확정 외상매출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를 제 1 호에 추가하여 할 수 있고 이 경우 외상매출채권 양도통지서(확정채권 양도통지용) 원본을 구매기업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방법에 의합니다.</p> <p>3.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 앞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은행에게 수여합니다.</p>	<p>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한 문구 수정</p>
<p>제 4 조 (판매기업의 진술 및 보증)</p>	<p>1. 판매기업은 본 계약 체결시까지 대상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대상채권이 제 3 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구매기업으로부터 회수가능하고, 구매기업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판매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합니다.</p> <p>2.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판매기업이 진술하고 보증한 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은행의 요청에 따라 판매기업은 그 즉시 은행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p>	<p>제 4 조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진술 및 보증)</p>	<p>1.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본 계약 체결시까지 대상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대상채권이 제 3 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구매기업으로부터 회수가능하고, 구매기업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은행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으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합니다.</p> <p>2.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진술하고 보증한 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은행의 요청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그 즉시 은행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p>	<p>용어 수정 용어 수정</p>
<p>제 5 조 (변제충당 및 정산)</p>	<p>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함에 따라</p>	<p>제 5 조 (변제충당 및 정산)</p>	<p>은행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으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p>	<p>용어 수정</p>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우선적으로 판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원이 있으면 판매기업이 지정하는 판매기업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합니다. 단 판매기업의 다른 채권자가 대상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하는 경우 그 압류된 금액 범위내에서 본 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압류 등 효력이 선후가 결정될 때까지 남은 금원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통지의무)

판매기업은 물품의 수량, 품질, 가격, 사후관리 등 판매기업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물론 사고, 전쟁,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은행이 매출채권대전을 구매기업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은행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특약사항)
(기재생략)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e-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e-안심팩토링대출용),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e-안심팩토링대출용)]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를 약정함	본 인	(인)
---	-----	-----

20 년 월 일

본인(채무자겸채권양도인) _____ (인)

주 소 :

행사함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우선적으로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13 조의 충당순서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원이 있으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지정하는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합니다. 단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다른 채권자가 대상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경우 그 압류된 금액 범위내에서 본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압류 등 효력이 선후가 결정될 때까지 남은 금원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6 조 (담보가치의 유지)

양도인은 공사의 부실·납품의 불합격 등 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제 2 조의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지시 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특약사항)
(현행과 같음)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e-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e-안심팩토링대출용),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e-안심팩토링대출용)]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를 약정함	본 인	(인)
---	-----	-----

20 년 월 일

채권양수인 (은행)

본인(채무자겸 채권양도인)

용어 수정

서명 위치 수정

<p>채권양수인 <u>주식회사 하나은행</u> <u>(인)</u></p> <p>주 소 :</p> <p>거래처(구매기업) 정보</p> <p>업 체 코 드 : _____</p> <p>중 심 기 업 명 : _____</p> <p>중심기업사업자번호: _____</p>	<p><u>주식회사 하나은행</u> (인) <u>(인)</u></p> <p>주 소 : _____ 주 소 : _____</p> <p>거래처(구매기업) 정보</p> <p>업 체 코 드 : _____</p> <p>중 심 기 업 명 : _____</p> <p>중심기업사업자번호: _____</p>	
--	---	--

2. 개정 시행일 : 2019년 5월 30일

3.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 적용